

문서번호	청소행정과-110347
결재일자	2015.10.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 무 관	청결관리팀장	청소행정과장	주민생활복지장	
안재출	임종열	최성연	10/08 오영수	
협 조				
	재무과장	문정주	계약팀장	장기현 代배진범

2016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폐합성수지류 민간위탁 처리계획

<p>■ 추진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8조제1호, 제3호 ●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등에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 <p>■ 처리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처리대상 :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 폐합성수지류 ● 방 법 : 민간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· 처리 ● 기 간 : 2016.1.1 ~ 2016.12.31 ● 연간발생량 : 연3,300ton ● 소요예산 : 429,000천원 <p>■ 업체선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방 법 : 일반공개경쟁입찰(계약원가 심사후) ● 계약조건 : 별첨참조 ● 입찰제한 : 폐기물중간처리업(소각)전문업체로서 서울,인천,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(운송비 고려)에 한함.

주민생활복지국
청소행정과

폐 합 성 수 지 류 민 간 위 탁 · 처 리 계 획

대형생활폐기물 해체 과정이나 무단투기 쓰레기등에서 발생하는 『폐합성수지류』 폐기물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기에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·처리 하고자 함.

I 근 거

■ 관련근거

-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8조제1호, 제3호
-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등에관한 사무처리규정 제9조
 - 불법 폐기물의 반입금지 -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만 반입

II 처 리 개 요

■ 연도별 처리현황 (단위 : 천원/톤)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 10월간
발생량(톤)	2,518	2,726	2,628	2,850	2,735	3,027	3,000
단가(원/톤)	156,464	117,666	121,189	95,431.6	104,623	104,886	103,770
비용(천원/톤)	391,000	320,756	346,599	271,980	286,143	317,532	311,310

대 상

- 대형생활폐기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류
- 기타 불법무단투기쓰레기
 - 폐비닐, 음식물쓰레기 이물질류, 기타 소각대상 복합폐기물 등

처리장소 : 폐기물전문처리업체 자체소각장

처리방법

- 톤당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위탁·처리
- 구청 차량을 이용하여 위탁업체까지 운송

Ⅲ 처 리 계 획

처리대상

구 분	대형폐기물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	기타 복합적 잡쓰레기
종 류	폐합성수지류 (페타이어, 폐고무대야, PVC류)	폐비닐, 음식물쓰레기류, 재활용 및 매립 불능 기타 소각대상

발생 예상량 : 3,300톤

- 산 출 내 역 : 월 평균 275톤×12월=3,300톤

계 약 기 간 : 2016. 1. 1 ~ 2016. 12. 31

처리 비용(단가) 산정

-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시장조사후 처리비용 산정

● 시장조사현황(부가세 면제금액)

상 호	A사 (애니테크)	B사 (비노텍)	C사 (성림유화)	D사 (부경산업)	E사 (에코그린)	처리비용 단가산정 (최저금액)
위 치	양주시 남면 상수리 9-2	안산시 원시동 836-9	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15	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3-2	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440-5	130,000원
금 액 (톤당가격)	150,000	140,000	150,000	150,000	130,000	

■ 소 요 예 산

- 산 정 금 액 : 429,000천원(예상)
- 산 출 근 거 : $130,000\text{원} \times \text{연 } 3,300\text{톤} = 429,000\text{천원}$
※ 일반관리비, 이윤포함, 부가세 면제
- 예 산 과 목 : 폐기물감량화및자원화, 폐기물처리, 폐기물처리위탁,
민간이전, 민간위탁금

IV 업 체 선 정

■ 선정방법 : 일반공개경쟁 입찰

■ 계약조건(안) : 별 첨

■ 입찰자격조건

-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5항 “별표7의 제2항(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) 가목 1)소각전문의 경우”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(소각전문)업체로서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
- 예산 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 적용(지방계약법 제23조)

※ 지역제한사유

- 우리구 차량으로 처리업체까지 폐기물을 운송함에 따라 운송비 절감 및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

V

행정사항

- 폐기물 민간위탁·처리 방침을 필한 후 감사담당관에 계약원가심사 의뢰후 입찰 실시
- 소각폐기물 반입(처리)물량 계량확인 철저(수송책임자 입회 확인)

- 붙임 1. 위탁계약서(안) 1부.
2. 과업지시서 1부. 끝